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 14(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3. 6. 20(금)
- 다. 상정일자 :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 6. 20)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특수업무시설 근무자에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근무자의 사기를 진작 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지급액 조정.(별표 3)

지급대상	현재	조정액
사회복지팀(공설묘지담당자)	180,000	270,000
위생환경사업소	150,000	240,000
대화쓰레기매립장	120,000	240,000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먼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살펴보면,

- 특수업무수당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단위 : 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전담기관·시설근무자	매월	조례로 정한다. 50,000 ~ 270,000범위내
공원묘지·납골당등 묘지·납골당관리·유지전담기관·시설근무자		

- 위 표와 같이 특수업무수당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월 50,000원에서 270,000원 범위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내용은

- 특수업무수당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지급대상	현재	조정액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80,000	월 270,000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	월 240,000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	월 240,000

○ 특수업무수당의 형평성문제 제기

- 특수업무수당은 1991년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수당으로 시행당시 상급 기관에 의하여 묘지유지관리 담당과 분뇨처리 및 쓰레기처리의 시설근무자의 업무난이도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현지근무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불합리한 조정으로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도리어 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번기회에 특수업무수당의 대상되는 공무원의 업무와 우리군의 환경을 심도있게 따져보고 객관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설근무자의 현황과 주요업무·주변환경을 살펴보면,

-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시설근무자

가. 소속 : 환경복지과 사회복지계

나. 인원 : 1명(기능직)

다. 주요업무 및 주변환경 : 매장신고·접수처리·시설물관리

- 분뇨처리장 시설근무자

가. 소속 : 위생환경사업소

나. 인원 : 7명

다. 주요업무 및 주변환경 : 관내에서 반입된 분뇨를 약품처리등을 통해 정화시킴.
처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

- 쓰레기처리장 시설근무자

가. 소속 : 대화쓰레기매립장

나. 인원 : 3명

다. 주요업무 및 주변환경 :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등을 수거하여 매립함.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환경호르몬 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처리장근무자의 주변위생상태(악취·해충)나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성이 있음에도 묘지·납골당관리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 생각되어 형평성있게 묘지·납골당시설

근무자(1명), 분뇨처리장근무자(7명), 쓰레기처리장근무자(3명) 모두에게 똑같이 27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수당지급에 차이를 둔 이유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타 시·군의 지급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충분히 조정가능한 부분임.

5. 토론포요지 : 특수업무수당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업무와 우리군의 환경을 심도있게 따져 볼 때, 객관성있는 수당을 지급하여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6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고 힘들다는 객관적 기준없이 차등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서로간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2. 수정주요골자

- 【별표 3】의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240,000원”을 “월270,000원”으로 수정한다.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장려지급수당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27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270,000원